

3.1.13 불용품및손망실처리위원회규정

제정 1995. 12. 09.

개정 2021. 07. 29.

제1조(목적) 본 대학교의 재산 및 비품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불용품및손망실처리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불용품및손망실처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사무처장, 부위원장은 사무부처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팀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
③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자산관리원 1인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.

제3조(직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

④ 위원장은 필요시에는 운영부서장 또는 관계 실무자를 참석시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⑤ 본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의안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① 불용의 결정 및 처리방법 심의

② 자산의 손망실 사고의 진상조사 및 처리방법 심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